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68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강○○, 박○○
피 고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3. ○○ ○○구 B 일원에 주거 및 업무복합건물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 시행에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8. ○○ ○○구 C 등 6필지 총 2,5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감면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50%의 감면 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169,213,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구 법인세법(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2. 원고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850,411,56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구체적인 처분 내역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제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3호) 등과 함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제9호)을 열거하였으며, 위 제9호 각 목의 요건 중 이 사건과 관계된 것은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그 밖의 관계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 요건(설비투자 등 특정사업에 자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운용 및 수익 배분)

원고의 목적사업은 이 사건 부동산에 주거 및 업무복합건물을 신축 및 분양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주거 및 업무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에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원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71, 을 제10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원고의 94.1% 지분을 보유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사실상 지배·운영하는 E에게 2010. 10. 8.부터 2010. 11. 25.까지 합계 350억 원을 대여한 사실, ② 원고가 2010. 8. 18. D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D가 보유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25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인수하고 그에 대한 이자율을 감경한 사실, ③ 원고가 위 포괄양수 과정에서 D로부터 이전받는 자산이 부채보다 214억 원 상당 부족하였음에도 이를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 ④ ○○세무서장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E에 대한 대여금 350억 원, F에 대한 대여금 250억 원, D에 대한 미수금 214억 원 상당을 모두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각 익금산입하는 등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E의 대여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임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을 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⑤ 원고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누31302 판결)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위 각 행위가 원고의 설립목적과 무관하거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등이 문제되는 사항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일 뿐이다. 오히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이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의 창업 및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제 설립 목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사업의 내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상,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 요건(본점 외 영업소 및 직원과 상근 임원의 부존재)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정관에서 직원과 상근 임원을 두지 않는 대신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한다고 정한 사실(제4조, 제4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44조)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정한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과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이 E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소득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임원에 포함시킴으로써 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려는 취지인 반면(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명목회사로서 자산관리 및 운영사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 인구유발효과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되 그 요건으로 임원의 '비상근'을 요구하는 것인바, 이처럼 위 각 법령의 규정상 요구되는 내용과 취지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E이 법인세법상의 임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근' 임원에 해당하여야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인 1주 40시간에 상응할 정도의 근로를 상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 요건(자본금 규모)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설립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까지 자본금이 계속 50억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자본금 규모(50억 원 이상일 것)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설립 당시인 2010년 말 기준 소득금액이 (-)15,222,000,000원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상법 제451조 제1항) 기업회계기준상의 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과 구별되는 개념이고,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는 자본금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것만을 요구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뿐 자본잠식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자본금 규모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3.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선택적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남을 이유로 이를 경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에 해당한다(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려는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인데(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두47403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는 취득세 납부기한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날인 2014. 10. 29.로부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원고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 불충족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12.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피고는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20.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2021. 5. 27.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피고가 2021. 10. 28. 관련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702)의 진행경과를 보고 추가증거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한 변론기일 변경(추후지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별지 1

목 록

순 번	세 목	본세(원)	가산세(원)		고지세액(원)
1	취득세	441,425,990	과소신고	44,142,590	725,483,600
			납부불성실	239,915,020	
			소 계	284,057,610	
2	농어촌 특별세	7,357,100	과소신고	-	11,371,130
			납부불성실	4,014,030	
			소 계	4,014,030	
3	지방 교육세	73,571,000	과소신고	-	113,556,830
			납부불성실	39,985,830	
			소 계	39,985,830	
합 계		522,354,090		328,057,470	850,411,560

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별지 2

관 계 법 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 구 법인세법(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05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3. 그 밖의 경우: 5년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상법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끝.